

#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이상 또는 기능저하를 말한다.
2.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.

제 3 조(전담부서) 장애학생 지원업무는 학생복지처에서 수행한다.

## 제 2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
제 4 조(장애학생 파악) ①전담부서는 매학기 초 학과장을 통하여 해당학생의 신고를 받아 장애유형 및 등급을 파악하여야 한다.

②전담부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및 지원을 총괄한다.

③전담부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장애학생 정보 제공) ①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수강하는 강좌의 교·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·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·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
제 6 조(우선 수강신청) 학과장은 장애학생이 중증장애,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.

제 7 조(학점당 등록) 장애학생은 학기별 최저신청학점과 관계없이 신청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해서는 한양여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을 따른다.

제 8 조(장학금지급)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.

## 제 3 장 대학생활 지원

제 9 조(편의시설 확충) 총장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필요시에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6-0-12~2,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

제10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 전담부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강, 장애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 4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11조(설치)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.

제12조(구성) ①위원회는 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복지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②학생복지처장, 교무처장, 기획조정처장, 사무처장, 학생복지팀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③위촉위원은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학생복지처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교육·복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4조(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(1)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.3.1부터 시행한다.